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3. 6.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7년 2월 22일

나. 발 의 자 : 유준용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17년 2월 22일

라. 상정일자 :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3. 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윤준용 의원)

가. 제안이유

○ 거주자전용주차구획에 무단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상향 조정 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펅의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 무단주차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신설 (안 제2조제2항제11호)
-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안 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본 개정조례안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에 무단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상향 조정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O 주요내용

- 2017년 7월 1일부터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에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 현재 공영 노상주차장 4급지 기준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2급지 기준의 주차요금과 가산금 으로 상향하는 것임.
-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과 전용주 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주차요금 외의 사항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조례안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에 무단주차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는 보 행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인상을 통한 무단주차를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상향조정 은 형평성과 차주의 부담을 고려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도심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형차향 및 건설기계의 전용 공영주차장 확보 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준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4

발의연월일: 2017년 2월 일

발 의 자 : 윤준용 의원 외 9명

1. 제안이유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서 무단주차하는 차량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 제기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무단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 무단주차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신설 (안 제2조제2항제11호)

나.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안 부칙)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주차장법」제2조(정의),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2017. 2. 7. ~ 2. 13.)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 중 "제5조"를 "제5조의2"로 한다.

제2조제2항에 제11호를 신설한다.

11. 제1호와 제10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 무단주차의 경우 점용 주차면 1구획당 공영노상주차장 2급지 기준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략)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②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가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9. (생략)	1.~9. (현행과 같음)
10. <u>제5조</u> 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10. 제5조의2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사람이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	받은 사람이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
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_<신 설>	11. 제1호와 제10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 내 무단주차의 경우 점용 주차면
	1구획당 공영노상주차장 2급지 기준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